

지식경영연구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지식경영학회 '지식경영연구'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의 구성

제 2 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1. 편집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지식경영학회 정관>(이하 정관) 제23조(위원회의 구성) 제1항에 의거, 편집위원장과 약간 명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2. 편집위원장은 '정관' 제23조(위원회의 구성) 제1항에 따라 학회 회장(이사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3. 편집위원은 '정관' 제23조(위원회의 구성) 제6항에 따라 본 학회 정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4.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을 대표하여, 편집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재정을 관리하는 편집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2016.1.1.개정).

제 3 조 (임기)

1.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정관' 제23조(위원회의 구성) 제3항에 의거,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2. 편집위원의 임기는 '정관' 제23조(위원회의 구성) 제4항에 의거,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제 4 조 (편집위원의 선정)

편집위원은 지식경영연구의 편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편집위원장은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 선정한다.

1. 다양한 시각이나 입장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여 편집활동이나 연구 활동이 특정한 시각이나 입장에 편향되지 않도록 한다.
2. 세부 연구 분야 별로 고른 분포를 이루도록 하여 편집활동이나 연구 활동이 특정한 분야에 치중되는 것을 방지한다.
3. 지역별로 고른 분포를 이루게 하여 편집 및 연구 활동이 서울 지역에 집중되는 것을 피한다.
4. 특정 학교나 기관에 편집위원이 집중되는 것을 피한다.

제3장 업무 및 운영

제 5 조 (업무)

본 위원회는 '정관' 제25조 (학회지의 발간)에 관련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회지 기고 논문의 심사, 편집 및 발간
2. 편집 관련 중요 자료의 발간
3. 기타 본 편집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6 조 (운영)

1. '정관' 제23조(위원회의 구성) 제2항에 의거, 본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소집된다.
2. 본 위원회는 '지식경영연구'에 투고된 원고의 게재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을 선임·위촉하고 심사평에 근거해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3. 위원회의 행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조교를 둔다.

제 7 조 (의결)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본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